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2. . . (제 회)	

산 립 복 지 진 흥 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2. . .

법 제 처 심 사 전

1. 의결주문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산림복지소외자의 범위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추가하고, 지역주민에 대한 산림복지서비스 이용료 감면을 확대하는 한편, 산림복지지구 지정 등을 위한 주민의견 청취 절차를 개선하고, 산림복지전문업 중 종합산림복지업의 전문인력 요건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산림복지소외자의 범위 확대(안 제2조)

- 산림복지소외자의 범위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등을 추가함

나. 산림복지서비스 이용료 감면대상 확대(안 제27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지역주민에 대한 이용료 감면 범위를 “읍·면·동에 거주하는 사람”에서 “시·군·구(자치구에 한정한다)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확대함

다. 산림복지지구 지정 등 주민의견 청취 절차 개선(안 제29조)

- 산림복지지구 지정 등을 위한 지역주민 의견 청취 시 제출된 의견은

실제 사업을 추진할 산림복지단지 조성자가 이를 검토하여 의견제출한 자에게 통보하고, 그 내용을 산림청장에게 제출하도록 절차를 개선함

라. 종합산림복지업의 자격요건 개선(안 제25조 관련 별표 5, 부칙 제2조)

- 종합산림복지업 등록시 필요한 전문인력 중 산림치유지도사는 현행 5명 이상에서 3명 이상으로 완화하고, 산림교육전문가 5명에는 종합산림복지업의 업무범위에 맞는 전문인력이 각 1명 이상 포함하도록 하되, 이미 종합산림복지업으로 등록한 자는 1년 이내에 업무범위별 인력요건을 갖추어 산림청장에게 다시 등록하도록 함

마. 행정제재 가중처분 명확화(안 제19조 관련 별표 2, 안 제26조 관련 별표 6, 안 제49조 관련 별표 9)

- 가중된 행정(부과)처분의 적용차수는 그 위반행위의 전 행정(부과)처분 차수의 다음 차수로 명확히 함

바. 법률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및 용어 변경(안 제6조, 제9조, 제11조, 제15조, 제47조, 안 제49조 관련 별표9)

- 법률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 및 같은 법 제6조제2항 개정에서 산림복지진흥원에 위탁하는 “기초조사”를 “실태조사”로 용어 변경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예정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예정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6. 그 밖에 가구 소득이나 재산 등 경제적 수준이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제3조제1호 중 “같은 법 제11조의2제2항”을 “같은 법 제11조의2제3항”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기초조사의 위탁)”을 “(실태조사의 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기초조사”를 “실태조사”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8조제3항제1호”를 “법 제8조제4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8조제3항제2호”를 “법 제8조제4항제2호”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법 제8조제5항”을 “법 제8조제6항”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8조제5항”을 “법 제8조제6항”으로 한다.

제27조제2항제10호 중 “읍·면·동”을 “시·군·구(자치구로 한정한다)”로 한다.

제29조제5항 중 “의견에 대한 검토 결과를”을 “의견을 산림복지단지의 조성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산림복지단지의 조성자는”으로, “해당 시장·군수·구청장 및”을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결과”로, “자”를 “자 및 해당 시장·군수·구청장과 산림청장”으로 한다.

제47조제2항제2호 중 “기초조사”를 “실태조사”로 한다.

별표 2 제1호가목 전단 중 “처분을”을 “행정처분을”로 하고, 같은 목 후단 중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일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날과 그 행정처분 후 다시 적발한”을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으로 하며, 같은 호 제1호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목 및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단, 적발된 날로부터 2년 이전에 한 행정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를 정할 때에 반영하지 않는다.

별표 5 제1호의 업무범위란 중 “개발·보급”을 “개발·보급 사업”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의 업무범위란 중 “지도·교육”을 “지도·교육 사업”으로 하며, 같은 표 제3호의 업무범위란 중 “지도”를 “지도 사업”으로 하고, 같은 표 제4호의 업무범위란 중 “지도·교육”을 “지도·교육 사업”으로 하며, 같은 표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제3조제5호에 따른 종합산림복지업	제1호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 중 하나 이상의 사업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에 따른 산림치유지도사 3명 이상(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급 산림치유지도사를 1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 및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산림교육전문가 5명 이상(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범위 중 해당하는 업무범위의 전문인력 1명 이상 포함)	사무실
-----------------------	-----------------------------------	--	-----

별표 6 제1호가목 전단 중 “처분을”을 “행정처분을”로 하고, 같은 목 후단 중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일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날과 그 행정처분 후 다시 적발한”을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으로 하며, 같은 호 제1호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목 및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단, 적발된 날부터 2년 이전에 한 행정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를 정할 때에 반영하지 않는다.

별표 9 제1호가목 전단 중 “과태료를 부과받은”을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으로 하고, 같은 목 후단 중 “위반횟수는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은 날과 부과처분 후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를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로 하며, 같은 호 제1호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목 및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단, 적발된 날부터 2년 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를 정할 때에 반영하지 않는다.

별표 9 제2호나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66조제1항제3호”를 “법 제66조제2항제1호”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66조제1항제4호”를 “법 제66조제2항제2호”로 하며, 같은 호 라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66조제1항제5호”를 “법 제66조제2항제3호”로 하고, 같은 호 마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66조제1항제6호”를 “법 제66조제2항제4호”로 하며, 같은 호 바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66조제1항제7호”를 “법 제66조제2항제5호”로 하고, 같은 호 사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66조제1항제8호”를 “법 제66조제1항제2호”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합산림복지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합산림복지업으로 등록한 자는 이 영 시행 후 1년 이내에 별표 5에 따른 업무범위별 자격요건을 갖추어 산림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산림복지소외자의 범위)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 호에서 “소득수준이 낮은 저소득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 4. (생략) <u><신설></u> <u><신설></u>	제2조(산림복지소외자의 범위) -- ----- ----- ----- ----- ----- ----- 1. ~ 4. (현행과 같음) 5.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에 따른 지원대상자 6. 그 밖에 가구 소득이나 재산 등 경제적 수준이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 하는 사람
제3조(산림복지전문업) 법 제2조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 을 말한다. 1. 산림치유업: 「산림문화·휴 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 림치유(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산림치유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지도하거나 <u>같은 법</u> <u>제11조의2제2항</u> 에 따른 산림	제3조(산림복지전문업) ----- ----- ----- ----- ----- 1. ----- ----- ----- ----- <u>같은 법</u> <u>제11조의2제3항</u> -----

치유 프로그램을 개발·보급 하는 사업 2. ~ 5. (생략) 제6조(<u>기초조사의 위탁</u>) 산림청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u>기초조사</u>를 법 제49조에 따른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 위탁한다. 제9조(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등) ① 산림청장은 <u>법 제8조제3항제1호</u> 또는 제8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 5. (생략) ② <u>법 제8조제3항제2호</u>, 제4호부터 제7호까지 또는 제9호에 따라 위원을 추천하거나 지명하는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에 대한 추천이나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제12조(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심의사항) ① <u>법 제8조제5항</u>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	----- ----- 2. ~ 5. (현행과 같음) 제6조(<u>실태조사의 위탁</u>) ----- ----- ----- <u>실태조사</u> ----- ----- -----. 제9조(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등) ① ----- <u>법 제8조제4항제1호</u> ----- ----- ----- ----- -----. 1. ~ 5. (현행과 같음) ② <u>법 제8조제4항제2호</u> ----- ----- ----- ----- ----- ----- -----. 제12조(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심의사항) ① <u>법 제8조제6항</u> ----- -----
--	--

(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는 제1분과위원회와 제2분과위원회로 나누어 설치한다.

②·③ (생략)

제15조(전문위원) ①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이하 “전문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산림청장이 임명한다.

1. ~ 3. (생략)

②·③ (생략)

제27조(산림복지서비스이용자의 비용부담 등) ① (생략)
② 법 제23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제8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2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1. ~ 9. (생략)

10.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가 소재하는 읍·면·동에 거주하는 사람

-----.

②·③ (현행과 같음)

제15조(전문위원) ① 법 제8조제6항-----

-----.

1. ~ 3.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27조(산림복지서비스이용자의 비용부담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 9. (현행과 같음)

10. -----
---- 시·군·구(자치구로 한정한다)-----

11. · 12. (생략) ③ · ④ (생략) 제29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 ~ ④ (생략) ⑤ 산림청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u>의견에 대한 검토 결과를</u> 공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u>해당 시장·군수·구청장 및 그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u> 통보하여야 한다. 제47조(권한의 위임·위탁 등) ① (생략) ② 산림청장은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진흥원에 위탁한다. 1. (생략) 2. 법 제6조에 따른 진흥계획 수립을 위한 <u>기초조사</u> 3. ~ 5. (생략) ③ (생략)	----- 11. · 12. (현행과 같음)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29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u>의견을 산림복지단지의 조성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산림복지단지의 조성자는</u> ----- ---- <u>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결과를</u> ----- <u>자 및 해당 시장·군수·구청장과 산림청장</u>---- 제47조(권한의 위임·위탁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현행과 같음) 2. ----- ----- <u>실태조사</u> 3. ~ 5.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산림청 산림복지정책과	
연 락 처	(042) 481 - 1841